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32
----------	-----

제출년월일 : 2008. 5. 7.  
제 출 자 : 대전광역시교육감

## 1.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 등의 개정으로 우리 교육청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가 현행 법령과 조문 등이 일치하지 않아 조문을 정리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동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방법 변경(안 제2조제1항제1호)
  - 위원 위촉대상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
-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관할 대상 변경(안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3급 상당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 심사관할권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재산등록사항 심사 기능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4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 다. 위원회 회의시 의결정족수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정비(안 제6조제2항)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허위등록자 및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의심되는 자,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 조사의뢰 등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통보, 징계의결 요구, 고발사항 등)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

- 라.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거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함
- 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대전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9조 신설)
- 전년도의 재산등록 ·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보고

### 3. 참고사항

- 가.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나. 관련법령 빨췌 : 붙임
- 다. 2008. 1. 10. ~ 1. 31.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내용 없음.

#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교육감”을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각 “2명”을 모두 “2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위원회의장”을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으로 한다.

1.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공무원”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위원 및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1. 제2항의 위원회 관할 대상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제6조제2항 단서 중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3조 내지 법 제29조”를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지방의회 등에의 보고) ① 위원회는 매년 대전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 및 운영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u>교육감</u>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5인의 위원은 <u>법관</u> · <u>교육자</u> 또는 <u>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u> 중에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위촉한다.</p> <p>2. 4인의 위원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 <u>2명</u>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 <u>2명</u>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②(생 략)</p> <p>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u>교육위원회의장</u>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제2조(구성) ①.....</p> <p>.....</p> <p>.....<u>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u>.....</p> <p>1. .....<u>법관</u>, <u>교육자</u>, <u>학식과 덕망이 있는자</u> 또는 <u>시민단체</u>(「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2. .....</p> <p>.....</p> <p>..... <u>2인</u>.....</p> <p>..... <u>2인</u>.....</p> <p>.....</p> <p>②(현행과 같음)</p> <p>③.....</p> <p>.....</p> <p>.....<u>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u>.....</p> <p>.....</p>
<p>제3조(기능) ①(생 략)</p> <p>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p> <p>2.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p> <p>3. (생 략)</p>	<p>제3조(기능) ①(현행과 같음)</p> <p>1. 제2항의 위원회 관할 대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p> <p>2. .....<u>제12항</u>.....</p> <p>.....</p> <p>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9조(지방의회 등에의 보고)</u></p> <p>① 위원회는 매년 대전광역시의 회 2차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 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 및 운영실태</li> <li>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li> <li>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li> </ul>	<p><u>제10조</u>.....</p> <p>.....</p> <p>.....</p> <p>.....</p>
<p><u>제9조</u>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p>	

## 관련법령 발췌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7.12.13, 1997.12.31, 1999.1.21, 1999.12.31, 2000.12.29, 2001.1.26, 2003.3.12, 2005.12.29, 2006.2.21>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11. 기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⑪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그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⑫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12.31>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교

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개정 1991.11.30, 1993.6.11, 1994.12.31, 1997.12.13>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1.11.30, 1993.6.11, 1994.12.31, 1997.12.13, 2006.12.28>

7. 특별시 · 광역시 · 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 · 광역시 · 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2001.1.26>

④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 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신설 1993.6.11, 1997.12.13>

6. 특별시 · 광역시 · 도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 · 군 · 구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 · 광역시 · 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제23조 삭제 <2001.7.24>

제20조의2 (국회 등에의 보고 <개정 2006.12.28>)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또는 해당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록의무자)** ③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9.12.7, 2000.4.18, 2001.4.27, 2001.11.29, 2005.2.11, 2005.7.26, 2006.6.29, 2006.8.17, 2006.12.21>

2.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9.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읍·면·동 소속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중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 또는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

9의2.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중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

**제19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4.12.31, 2005.2.11, 2007.6.21>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6.21>

**제36조 (연차보고서 작성등)** ①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 및 운영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장과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운영실태와 활동사항등을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에 관하여는 제8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12.31>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